



수행과제명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법제 정비방안

과제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초록

- ◎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스쿨미투를 통해서임.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이라는 특성 상 학교 성희롱·성폭력은 조기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가 장기화·집단화되면서 더 큰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 ◎ 학교 성희롱·성폭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신고의무제도임. 그러나 신고의무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경미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 의사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적 회복이나 선도 등 교육적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포섭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음.
- ◎ 이에 본 연구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신고의무제도에 주목하여 신고의무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그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에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됨.

●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법제 준비의 필요성

-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것임. 따라서 피해 당사자는 본인의 피해 상황을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쉽지 않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장기화되거나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특성을 갖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임.
- ▶ 현행법 상으로 직무상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교육보호하는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에 대해 피해 사실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신고의무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을 보호·교육하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직무상 피해 여부를 비교적 신속·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법적으로 각별히 보호·교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 ▶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포섭되어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한계도 있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고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신고의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늦장·축소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운영 현황

- ▶ **(발생현황)**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 중 학교 내 성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증가 추세에 비례해 성폭력 또한 증가하고 저연령화되고 있음. 학교폭력 중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8년 3,759건에서 2022년 5,240건으로 증가함. 학교급별로 보면 5년간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 중 중학교 비율이 48.2%였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26.7%, 초등학교 25.1% 순으로 나타나 초·중학교 발생 비율이 73%에 이룸. 전체 학교폭력 중 성폭력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고등학교는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5년간 25.8%에서 25.9%로, 중학교는 45.9%에서 51.5%로 증가함.
- ▶ **(신고현황)** 학교 성폭력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는 교원 대상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증가 추세에 비례해 2018년 2,325건에서 2022년 3,622건으로 증가하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원에 의한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현황)**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인지한 교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상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보건복지부)은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청소년성보호법」 상 교직원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여성가족부)는 2018~2022년까지 총 4건(중학교 3건, 고등학교 1건)이었음.
- ▶ **(성과 :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신고의무제도는 예방과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고의무제도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성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 성인지 감수성을 갖게 하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또한 학교 성희롱·성폭력은 암수율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제도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됨.
- ▶ **(성과 :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신고의무제도는 그동안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성 사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의 신설 등을 통해 책임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블러일으킴.

●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법제 분석

- ▶ **(도입)**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관련 법제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1997년 8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도입됨.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금지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었다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신고의무제도가 동법으로 이관됨.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 신고의무제도, 2005년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됨.
-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상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관련해 신고대상 행위, 신고의무자의 범위, 신고요건, 신고의무자에 대한 제재 및 보호조치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신고대상 행위(성희롱·성폭력의 법적 정의)** : 「학교폭력예방법」 상 성폭력은 2008년 개정 시 포함되었으나 타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제외되도록 규정함. 이는 성폭력 사건이 일반 학교폭력 사건보다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요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수사개시 및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임. 다만, 법 해석 상 학교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관계법 상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받되, 해당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사안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음. 또한 신고의무제도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② **신고의무자의 범위** :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제는 ‘누구든지’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하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와 직무상 신고의무가 부여된 신고의무자의 신고(신고의무제도)로 구분됨. 따라서 비신고의무자는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은 다른 법과 달리 직무상 종사자를 구분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 ③ **신고요건**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피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아동학대처벌법」에 한함)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등 관계기관을, 「아동학대처벌법」은 시·도, 시·군·구를 신고접수기관으로 함. 이때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신고의무 사유를 확대하고 있음. 현행법 신고의무제도의 취지상 신고의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신고의무 발생 요건으로 ‘피해가 의심된 때’를 추가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④ **신고인 등의 비밀보호 등 보호조치** :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자 관련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신고자 신원정보나 자료의 출판물 게재,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방지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비밀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 개별 법 상 제재 수준의 차이가 있음. 한편 신고인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치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방지법」은 해당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불이익 금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조항이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규정이 있으나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이처럼 각 법률의 신고자 보호조치의 수준이 달라 신고의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 동일 사안에 대해 차별적 보호로 인한 법규 간 체계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⑤ **신고의무자에 대한 제재** :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되 과태료 상한액이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의 300만원 이하와 달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신고불이행 뿐만 아니라 거짓 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개별법마다 다른 문제가 있음. 한편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폭력을 한 경우 가중처벌(2분의 1 가중)은 「아동학대처벌법」(제7조)과 「청소년성보호법」(제18조)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아동·청소년 학대 및 범죄 관련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와 동시에 피해 사실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짐. 학교폭력, 아동학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해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복·지속되는 재학대·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정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⑥ **신고의무자 교육** : 현행법 상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무교육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이며, 그 외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보고 및 기관·시설 평가 시 반영 등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점검·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 법제 정비 방안

① 학교 성희롱·성폭력(신고대상행위) 개념의 명확화

- ▶ 신고의무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가 피해 사실(신고대상 행위)을 명확히 인식·인지하여 조기 감지할 수 있어야 함.
- ▶ 「아동학대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범죄를 열거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에서 처벌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무엇인지, 해당 범죄가 어떤 유형의 폭력(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인지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성폭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되는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구성요건에 부합했을 때 해당 행위가 성립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 신고의무자 입장에서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성적 학대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거나 오판하여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 입법적으로는 현행 성적 학대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으로는 성희롱·성폭력 분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판정 및 사안처리 전반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외부전문지원단 설치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함.

<표 1> 「아동복지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u>성적 학대행위</u>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u>행위로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u>

●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②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2-1.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신고의무 불이행 보호

- ▶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무자가 의도적으로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이는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취지, 그에 대한 예외사유 허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함. 신고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신고미이행자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함.

<표 2> 신고의무제도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2)

현행	개정안
제3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3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자

<표 3> 신고의무제도 관련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2)

현행	개정안
제67조(과태료)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u>정당한 사유 없이</u>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선의의 신고이행자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 ▶ 신고의무자가 피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믿고 신고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신고하거나 사실관계를 오관하여 잘못 신고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 신고 후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며 신고의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원치 않는 신고 또는 은폐·축소 신고로 오인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신고의무자가 악의적으로 거짓·허위 등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사실의 문제가 있어도 그 신고사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이와 관련해 최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신고의무 관련 개별 법령에도 신고의무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표 4> 신고의무제도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3)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9조의2(신고의무자의 면책) 제9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고의무자는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표 5> 신고의무제도 관련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3)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34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자의 면책) 제3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고자는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2-3. 신고의무자 비밀보호 및 불이익금지 조치 강화

-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가정폭력처벌법」, 「국민체육진흥법」, 「군인복무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은, 피해학생 또는 신고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신고할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강화될 필요가 있음.
- ▶ 현재 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청소년성보호법」은 불이익조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음.

<표 6> 신고의무제도 관련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4)

현행	개정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u><신 설></u>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④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해자의 의사 확인 명문화 및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

- ▶ 신고의무제도가 조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을 보호·교육하는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나 피해자 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신고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다만,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교급 또는 연령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피해에 대해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연령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 학생을 대신해 보호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표 7> 신고의무제도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1)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의무) 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u>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u>	제9조(신고의무) 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나이 이상의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u>

<표 8> 신고의무제도 관련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1)

현행	개정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u>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u>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나이 이상의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u>

- ▶ 개별 법령 상 신고의무 규정에 피해자가 제한적 신고제도 이용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신고의무는 면제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제한적 신고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에게 제한적 신고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정보(피해자 보호조치 가능, 가해자에 대한 조치 불가능, 향후 신고 가능 등)가 충분히 제공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제한적 신고를 원할 경우 선택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교원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방치하거나 허위·축소로 신고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위반한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5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로 초기 대응 역량 강화

- ▶ 신고의무자 교육은 단순히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강조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취해진다는 식의 교육이 아닌 신고의무제도의 취지, 목적, 신고 후 피해자 보호방안, 전문적인 지원시스템(피해자 상담 및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법률 지원 등) 활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 현재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제외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상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신고의무자 교육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표 9> 신고의무제도 관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4)

현행	개정안
<신 설>	제00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0> 신고의무제도 관련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5)

현행	개정안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⑥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외부 전담기구 설치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안 처리를 위해서는 담당 교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함. 학교 성희롱·성폭력이 신고되면 즉시 가-피해자분리조치나 수사개시에 따른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가 발동되기 때문에 신고 전 사안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임.
- ▶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희롱·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현행 규정 상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기구 내 상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대부분 학내 신고의무자인 교원에게 신고행위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 수사·재판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와 안내가 필요하지만 이를 자문·지원해 줄 수 있는 윈스톱 전담기관이 없음.
- ▶ 따라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신고, 피해자 보호 및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등 처리를 일괄 외부 전담기구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판단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담기구에 상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및 외부전문기관의 지원을 상시화하는 방안(교육청 차원의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 등) 등이 가능하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해당 학교에 자문과 컨설팅 등 지원을 하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같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교육청 단위에 이관하는 방안도 가능함.

주관부처 : 국회

관계부처 :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